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3.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안 제4조)
 - (前)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後) 적극행정위원회
 -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한 면책 건의
-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성 확대 (안 제5조)
 - (前) 9명 이상 15명 이하 → (後) 9명 이상 45명 이하
- 회의 운영 사항 개정 (안 제6조)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가능
-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2조)
 -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등 선발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함.
- 안 제4조에서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대 반영함.
 - 특히 안 제4조제5호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행정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8. 25.]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이상 45명 이하로 확대 변경하고, 안건의 내용을 고려해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민간위원 1/2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이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1항의 개정으로 적극행정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서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 8명 이상(민간위원 1/2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 를 도입한 것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 안 제12조는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등에게 포상 또는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는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적극행정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시군,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신설해 적극행정 추진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사항 변경과 위원수를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 변경한 것으로, 이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또한 포상 지급 근거 신설도 적극행정 추진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바 본 조례안은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

<참고자료> 2020년 충청북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현황

□ 2020년 개최현황 (총 4회 개최)

- (1회) 2. 12.(수)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9명(가점7,휴가2)

- (2회) 4.14~4.17 /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 적극행정 실행계획
* 22개 실행과제 및 5개 주민체감형 중점과제 발굴·관리, 지방공기업
협업 추진체계 구축 등

- (3회) 5.20~5.21 / ‘Post-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 신속추진방안’ 의견제시
* 사업의 발굴·조례 등 규정 적극해석 및 사업 심사기준 탄력적 적용,
신속추진을 위한 예산 및 계약제도 적극 활용 등

- (4회) 9.17.(목)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14명(가점11,휴가3)